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6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김남희·송재봉·송옥주

윤후덕•박상혁•맹성규

김정호 · 남인순 · 박해철

정성호 · 임미애 · 박희승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 • 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 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 청을 제한함(안 제7조).
- 다.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3조).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 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출생자와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말한다.
 - 2. "출생등록"이란 출생의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모가 외국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한국인 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한경우에는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제4조(관장) 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정정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출생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②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읍·면장으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 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 ③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출생등록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출생등록사무처리) 제4조에 따른 출생등록사무는 출생등록에 관한 신청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

한다.

- 제7조(통보의 금지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제2장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신청

- 제8조(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 ①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 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그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 다.
 - ②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외국인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체류지
 - 2.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신청인의 성명·출생연월일·자격

- ③ 외국인아동의 성명은 영문 또는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출생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5.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혼인 중 출생자인 외국인아동을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 제9조(신청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모가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는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동거인
-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⑥ 신청의무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할 수 있다.
- 제10조(출생등록신청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생등록신청 기간 내에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 당 외국인아동인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생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 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청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등록신청 확인, 출생등록신청 최고, 출생자의 성명 등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11조(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 ① 출생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1.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 2. 출생 연월일 및 장소
-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출생등록번호
- 5. 기타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출생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생등록번호 부여 및 출생등록부의 기록・보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출생등록부의 관리) ①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출생등록사무는 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청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청지의 시·읍·면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이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3조(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규

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③ 증명서는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외국인아동의 성명, 출생 등록번호 및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출생등록부에 기록 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제11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출생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출생등록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14조(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2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대법원장이 정하는 재외공관 은 출생등록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출생등록증명서의 수수료) ①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려면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읍·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출생등록부 기재사항의 정정) ①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

- 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감독법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출생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사건 본인의 출생등록신청 수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사실을 안 때에는 신청사건 본인의 출생 등록신청 수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허가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확정판결에 의하여 출생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출생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출생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부를 폐쇄 한다.
 - 1.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임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③ 출생등록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부"는 "출생등록부"로 본다.

제4장 외국인아동의 사망

- 제20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외국인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신고는 제21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출 생등록번호

-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8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1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22조(사망신고의 장소)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제5장 불복절차

제23조(불복절차)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건"은 "출생등록사건"으로 본다.

제6장 신청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24조(신청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등록부에 기록할

- 수 없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청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5조(신청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 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생등록부의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청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신청서류 등의 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 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출생등록부를 열 람하거나 출생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람

-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0조(준용)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22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 제1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부"은 "출생등록부"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신청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아동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